

학생부종합전형심층면접D급판정지침(개정 2014.06.24)

제 정 2012. 9.
개 정 2014. 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생부종합전형 실시함에 있어 우송대학교 인재상에 알맞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며, D급 판정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 해당자에 대한 선발여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D급 판정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D급 판정할 수 있다.

- ①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수강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학과전공 이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타 학생에 부정적 내용이나 행동이 전이되는 효과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평가 시 평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평가불가(0점)로 판정된 경우

제3조 (협의록 제출) D급 판정 학과에서는 해당 내부(교수)위촉사정관 2인 및 해당 전임사정관으로 구성된 D급 판정위원의 D급 판정 협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 D급 판정 발생 시 학과에서 제출된 협의록은 입시공정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판정의 기재)

- ①판정점수는 평가정도의 평가불가에 해당되는 0점으로 한다.
- ②D급 판정 받은 경우 심층면접평가표의 종합 평가 및 기타 의견란과 종합정보시스템의 심층면접평가입력란에 D급 판정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의) D급 판정 해당 전임사정관은 성적사정 2일 이내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 협의록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의 처리) D급으로 판정된 경우는 선발에서 제한한다.

제8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입학사정관실 및 본교 입학사무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2013학년도 수시1차 입학사정관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중 제목과 제1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